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755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노정연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1. 1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524859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1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1.43%의, 그 다음날부터 2020. 9. 30.까지는 연 1.06%의, 그 다음날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0.8%의, 그 다음날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3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아래 3행 내지 제3면 2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피고는 1987. 1. 17. 부천시 삼정동 354 도로 82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어 위 토지 중 일부가 부천시 삼정동 354-8 도로 16㎡(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및 부천시 삼정동 354-9 도로 133㎡(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 1행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 지급하였다.”를 “이 사건 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4,272,000원, 이 사건 2토지의 매매대금으로 35,112,000원, 합계 39,384,000원을 지급하였다.”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3, 4행과 5행의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던”과 6행의 “기존의 도로에 대체되는 새로운”을 각 삭제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아래 3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물류시설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물류시설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인 경기도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가 물류시설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다.

2)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를 물류시설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6, 7, 8, 1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7년 당시부터 이 사건 2토지의 지목은 '도로'였고, 그 이후 지목이 변경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2토지는 2016. 10. 28. 이 사건 3차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새롭게 편입된 토지인데, 이 사건 2토지의 현황도,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토지는 위 3차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있기 이전부터 도로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아스팔트 포장까지 된 상태에서 차량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실제로 제공됨으로써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새롭게 편입된 이 사건 3차 실시계획 변경승인 당시 실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로서,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및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기존에 실제 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2토지의 폭을 확장하고 재포장 등을 하여 기존의 도로에 대체되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한 이상, 물류시설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도로는 관리청인 경기도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도로는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게 된다(원고는 이 사건 1토지 또한 이 사건 3차 실시계획 변경승인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1토지는 이 사건 3차 실시계획 변경승인 이전부터 도로가 아닌 주차장 부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거나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볼만한 증거 또한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1토지는 물류시설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2토지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상귀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 사건 3차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까지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류시설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2토지의 경우 용도폐지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토지는 물류시설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인 도로에 해당하고, 물류시설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대신 사업시행자에 대한 형평을 위해 종래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조항으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할 것이다.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무상귀속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부득이 그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유상매수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종래의 공공시설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가사 유상매수협의취득 과정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정당한 원인 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 판결 참조),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2토지를 유상매도하면서 지급받은 매매대금 상당액 35,112,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5,1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5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국유재산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 제1조에 따라 위 매매대금 지급 다음날인 2020. 4. 15.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1.43%, 그 다음날부터 2020. 9. 30.까지는 연 1.0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10. 6.까지는 연 0.8%,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광현, 판사 양철한, 판사 이정형